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민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근거 없이 시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공유재산이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나 동산을 의미하는 바, 공유재산이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시장”을 “구미시”로 수정 (안 제4조제6항)

나.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내용을 따르는 경우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물품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부분 삭제 (안 제5조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민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후단 중 “시장”을 “구미시”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경비 및 물품의 손·망실시”를 “경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 ⑤ (생략)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의한 업무대행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u>시장의 명의로</u>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u>구미시</u> -----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생략)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u>경비</u> ----- ----- -----<단서 삭제>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 가. 현금
 - 나. 유가증권
 -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 8. (생략)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소관 실·과		보건행정과
입 안 자	과 장	서 동 희
	담 당	이 재 균 (480-4011)